
부록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83
2. 2023년 중 주요 일지	90
3.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현황	92
4.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93
5. 통계	94
6. 용어 해설	99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2023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2023.1.13)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개정 필요성)

□ 금융시장 안정화조치 연장 시행 방안의 일환으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을 재연기하고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한시적 확대 조치를 3개월간 연장할 필요

(주요 개정내용)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을 3개월 연기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인 비율 인상 일정도 3개월씩 순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계획 변경

	현행	'23.5월	'23.8월	'24.5월	'24.8월	'25.5월	'25.8월
변경 전	70%	80%	80%	90%	90%	100%	100%
변경 후	70%	70%	80%	80%	90%	90%	100%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종) 및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추가한 조치를 3개월간 연장

○ 적격담보증권 인정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설정

(시행일)

□ 2023년 1월 31일

○ 적격담보증권 확대와 관련한 규정의 유효기간은 규정 시행일부턴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설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1조(담보증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담보증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25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의 비율에 따른 담보증권 금액을 제공한다.</p> <p>1.~2. (생략)</p> <p>③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2022. 10.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기간별 담보증권 제공비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적용 기간</th> <th style="width: 40%;">담보증권 제공비율</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td> <td>70%</td> </tr> <tr> <td>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td> <td>80%</td> </tr> <tr> <td>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td> <td>90%</td> </tr> </tbody> </table>	적용 기간	담보증권 제공비율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70%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80%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90%	<p>제21조(담보증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담보증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25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의 비율에 따른 담보증권 금액을 제공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2022. 10.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 1. 13.></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2023. 1. 13.></p> <p>이 규정은 202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기간별 담보증권 제공비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적용 기간</th> <th style="width: 40%;">담보증권 제공비율</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td> <td>70%</td> </tr> <tr> <td>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td> <td>80%</td> </tr> <tr> <td>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td> <td>90%</td> </tr> </tbody> </table>	적용 기간	담보증권 제공비율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70%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80%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90%	<p>- <별표> 적용기간 변경</p> <p>- 일부 적격담보증권의 유효기간 연장</p> <p>- 부칙 신설</p> <p>- 시행일자 명시</p> <p>-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 조정</p>
적용 기간	담보증권 제공비율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70%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80%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90%																	
적용 기간	담보증권 제공비율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70%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80%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90%																	

2023년도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2023.4.11)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개정 필요성)

- 금융시장 안정화조치 연장 시행 방안의 일환으로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한시적 확대 조치를 3개월간 연장할 필요

(주요 개정내용)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한시적 확대조치*를 3개월 연장

*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을 2023.7.31일까지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

국가철도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적격담보증권 인정기간은 2023년 7월 31일까지로 설정

(시행일)

- 2023년 4월 30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부 칙 <2022. 10. 27.>	부 칙 <2022.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 1. 13>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 1. 13>, <개정 2023. 4. 11.>	-일부 적격담보증권의 유효기간 연장
<신 설>	부 칙 <2023. 4. 11.>	- 부칙 신설
	이 규정은 202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자 명시

2023년도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2023.7.27)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개정 필요성)

-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납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조치를 상시화하고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추가 확대할 필요

(주요 개정내용)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한시적 확대조치*를 상시화

* 2022.11.1일부터 2023.7.31일까지 한시적으로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 및 은행채##를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

국가철도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범위에 지방채, 공공기관채, 회사채를 추가

- 금번 적격담보증권 범위에 신규 추가되는 담보증권도 일정한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증권으로 인정 범위를 제한

○ 신규로 추가되는 적격담보증권은 제2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신용위험이 내포된 특정 담보증권으로의 쓸림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담보증권을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그룹은 총 담보의 50% 이하로 제한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범위 확대

확대 전	확대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 (한시 허용)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 국가철도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허용)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 국가철도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채*, 공공기관채**, 회사채*** *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발행된 지방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 「상법」 제469조에 따라 발행된 회사채

(시행일)

□ 2023년 7월 31일

○ 다만 신규 적격담보증권 추가는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21조(담보증권의 제공) ① 차액결제참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증권으로서 자기가 발행한 증권은 차액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p> <p>1. ~ 8.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9.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총재가 정한 증권</p> <p><u><신 설></u></p> <p>② (생략)</p> <p>③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제2호의 담보증권은 제1그룹으로, 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담보증권은 제2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담보증권 중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1그룹으로 관리한다.</p>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액결제 대상거래 중 어음교환(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거래를 제외한다)은 담보증권 제공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액결제 신규참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재는 해당 기관의 담보증권 제공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p> <p>⑤ 총재는 제1항 각 호의 증권에 대한 담보인정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차액결제참가기관별 담보증권 제공금액을 해당 기관의 순이체한도 소진율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상하 각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제22조(담보증권의 대출담보 사용·처분) ① 차액결제참가기관이 제21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차액결제 대상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총재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21조제3항의 제1그룹과 제2그룹에 속하는 담보증권 중 차액결제시점이 같은 거래의 결제이행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증권을 해당 기관에 대한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p>	<p>제21조(담보증권의 제공) ① 차액결제참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의 증권으로서 자기가 발행한 증권은 차액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발행된 지방채</p> <p>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p> <p>11. 「상법」 제469조에 따라 발행된 회사채</p> <p>12.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1인 이상으로부터 A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획득한 증권(2인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획득한 신용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최저등급이 AA-등급 이상의 증권)으로 한정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제2호의 담보증권은 제1그룹으로, 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담보증권은 제2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담보증권 중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1그룹으로 관리한다.</p> <p>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차액결제 대상거래 중 어음교환(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거래를 제외한다)은 담보증권 제공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액결제 신규참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재는 해당 기관의 담보증권 제공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p> <p>⑥ 총재는 제1항 각 호의 증권에 대한 담보인정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계산된 차액결제참가기관별 담보증권 제공금액을 해당 기관의 순이체한도 소진율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상하 각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제22조(담보증권의 대출담보 사용·처분) ① 차액결제참가기관이 제21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차액결제 대상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총재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21조제4항의 제1그룹과 제2그룹에 속하는 담보증권 중 차액결제시점이 같은 거래의 결제이행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증권을 해당 기관에 대한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p>	<p>- 적격담보증권 추가에 따른 수정</p> <p>- 지방채, 공공기관채, 회사채를 적격담보증권에 추가</p> <p>- 호 번호 내림</p> <p>- 일정한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증권으로 적격담보 범위를 제한</p> <p>- 항 번호 내림</p> <p>- 추가된 적격 담보증권을 제2그룹으로 구분</p> <p>- 항 번호 내림에 따른 수정</p> <p>- 항 번호 내림에 따른 수정</p> <p>- 제21조 항 번호 내림에 따른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부 칙 <2022. 10.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 1. 13>, <개정 2023. 4. 11.></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부 칙 <2022. 10.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u><삭제></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3. 7. 27.></p> <p>이 규정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 일부 적격담보 증권의 유효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상시화</p> <p>- 부칙 신설</p> <p>- 시행일자 명시</p>

2. 2023년 중 주요 일지

시기	조치 내용
2023.2.3.	한국은행, CBDC 관련 조직 확대 등 조직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DC 실증 사업 추진 및 기술 연구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화폐 전담팀을 4개 팀으로 확대 개편(기존 1개 팀, 2개 반) • 지급결제 운영과 감시 기능의 분리를 위해 결제운영팀과 결제업무팀을 금융업무실로 이관
4.11.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등의 범위 확대 조치」 추가 연장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적격담보증권 등의 범위 확대 조치(2023.1.31일 시행)의 종료기한을 종전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
4.27.	한국은행,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중 지급결제제도 감시·정책 대응,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와 향후 정책방향을 기술
5.8.	한국은행, 「CBDC 모의시험 금융기관 연계실험」 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실험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운영환경에서 CBDC 모의시스템 주요 기능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
5.8.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종합 금융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별 맞춤 상품 추천과 빠른 전산처리가 가능
5.15.	한국은행, 오프라인 CBDC 기술연구 협력을 위해 삼성전자와 업무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리 무선 통신(NFC)을 통해 기기 간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
6.8.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15분 일찍(8:45분) 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코스피200선물 등 대표 파생상품의 개장시각을 9시에서 8시 45분으로 15분 일찍 개장하여 주식시장 개장 초기 변동성을 완화(2023.7.31일 시행)
6.30.	국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본회의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이 주요 내용(2024.7월 시행 예정)
8.24.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 소액후불결제 경영 허용 등 선불업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2024.9월 시행 예정)
8.30.	한국예탁결제원,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8.28일) 및 클리어스트림(8.30일)과 국제통합계좌 구축 및 운영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자는 별도의 보관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제통합계좌를 통해 우리나라 국제 등에 투자 가능
10.4.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BIS와 협력하여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 공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S는 실험(「CBDC 활용성 테스트」) 준비 과정에서 기술 자문을 제공했으며, 테스트 의의 및 세부 설계 사항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한국은행과 공동 발간
10.4.	한국거래소, 차세대 시장시스템 '엑스추어(EXTURE) 3.0'의 청산결제시스템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내·외, 일반상품 등 시장별 청산결제시스템을 차세대 시장시스템 기반 청산결제 플랫폼으로 통합했으며 실시간 리스크 산출, 시뮬레이션 기능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

시기	조치 내용
10. 13.	한국은행,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23년 사법학자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행의 CBDC 준비에 관한 현황 설명」, 「CBDC에 관한 주제」, 「민사분쟁 해결에서의 가상자산의 법적 평가 문제」 등 지급결제 환경변화와 CBDC의 사법적 제문제에 대해 논의
10. 17.	BIS,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공통 요구사항 보고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ISO 20022 도입 시 공통 요구사항을 정의한 보고서를 발간 한국은행은 BIS가 금번 발표한 'ISO20022 공통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BOK-Wire+)에 2026년 말(잠정)까지 ISO20022 도입을 완료할 계획
10. 30.	한국은행, 한국거래소와 디지털 금융·자산 인프라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의 'CBDC 활용성 테스트'와 한국거래소의 '분산원장 기술 모의실험' 연계를 추진
10. 31.	한국은행, 2023년 전자금융세미나(「디지털 금융의 발전 방향 및 향후 과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QR코드 소액지급결제의 진화 -모바일현금카드 ATM 입·출금서비스를 중심으로」, 「AI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 방향」 등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방향 및 향후 과제를 논의
11. 23.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 및 참여 은행 선정 방향 등을 포함
11. 23.	한국은행, Agustí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초청 세미나(「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CBDC, 예금 토큰(tokenised deposits) 등으로 구성된 미래 통화 시스템이 지향해야 하는 비전과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 CBDC 관련 기술적·제도적 이슈 및 미래 통화 시스템 구현 과정에서의 주요 고려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11. 30.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12.1일~2024.6.30일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30.0조 원으로 운용하기로 결정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한도 유보분은 9.3조 원으로 조정하고 여타 프로그램 한도는 변동 없음
12. 5.	한국은행, 이탈리아 중앙은행과 IT 및 지급결제시스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총액결제(RTGS) 시스템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
12. 6.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공동QR코드를 이용한 ATM 입·출금서비스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기종의 제한 없이 앱을 이용하여 은행권 ATM 입·출금이 가능 향후 모바일뱅킹 앱 및 결제플랫폼 앱과 서민금융기관·자동화기기사업자 ATM까지 도입을 확대할 계획
12. 8.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치금 관리기관 범위와 관리 방법, 콜드월렛(Cold Wallet) 보관 비용,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등을 규정(2024.7.19일 시행 예정)
12. 22.	한국은행, 네이버와 디지털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와 연계하여 한국은행 홈페이지 자료와 통계의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디지털기술을 한국은행 업무에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
2024.1. 11.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 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 및 각 프로그램별 한도의 유지기간을 종전 2024.6.30일에서 2025.8.31일로 연장

3.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현황

□ 총 133개 기관 (은행 53, 비은행 80)¹⁾

분류		가입기관명	
은행 (53)	국내은행 (20)	시중	우리, SC, 국민, 신한, 한국씨티, 하나, 케이, 카카오, 토스
		지방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특수	산업, 기업, 농협, 수협, 수출입
	외은지점 (33)	뉴욕멜론, 대화, 도이치, 엠유에프지, 멜라트,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소시에테제네랄, 스테이트스트리트, DBS, 야마구찌, 크레디아그리콜CIB, 유바프, 중국, 중국공상, 파키스탄국립, 호주뉴질랜드, BNP파리바, BOA, 크레디트스위스, HSBC, ING, JP모간체이스, OCBC, 중국건설, 교통, 모간스탠리, 바덴뷔르템베르크, 중국농업, 교통(청산), 스테이트뱅크오브인디아, 인도네시아가라, 중국광대	
비 은행 (80)	금융 투자회사 (44)	교보, 대신, 미래에셋증권, DB금융투자, 유안타, 리딩투자, 부국, 삼성, NH투자, 신영, 현대차, 유화, 하이투자, 코리아에셋, 키움, 흥국, 하나, 한국투자, 한양, 한화투자, KB, KIDB채권중개, SK, 신한투자, 상상인, 메리츠, 씨티그룹글로벌마켓, 유진투자, 이베스트, 케이프투자, 디에스투자, 다올투자, IBK투자, 카카오페이,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비엔케이투자, 노무라금융투자, 다이와증권코리아,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포스증권, 케이알투자, 토스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보험회사 (19)	한화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생명, 교보생명, KB손해,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DB손해, 농협생명, 메리츠화재해상, 흥국화재, 하나생명, 롯데손해, DB생명, 삼성화재, 한화손해, KDB생명, 하나손해, 현대해상화재	
	종금사(1)	우리종합금융	
	기타 (16)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중앙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금중개,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CLS, 서울외국환중개, 농협중앙회, 비지시캐피탈마켓, GFI코리아외국환중개, 트레이디션코리아외국환중개, 텔릿프리본코리아외국환중개	

주: 1) 2023.12.31일 기준

4.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제336조에서 준용)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시스템명	운영규칙	효력발생일시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규정, 동 세칙 및 동 절차	2006.8.21. 09:30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2006.8.21. 07:00
	타행환공동망	타행환업무공동망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2006.8.21. 09:30
	CD/ATM공동망	CD/ATM공동망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2006.8.21. 07:00
	어음교환시스템	어음교환업무규약,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규약, 전자어음업무규약, 내국신용장판매대금추심의뢰서교환규약 ¹⁾ ,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 규약 및 각 규약의 시행세칙, 재해·경영상 긴급상황 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특별규약	2014.1.10. 00:00
	지로시스템	지로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이용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CLS 은행	CLS시스템	CLS Bank International Rules, Settlement Member Agreement	2006.8.21. 09:30

주: 1) 내국신용장어음의 경우에는 원화 및 미달러화 표시에 한함

b.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2항(제336조에서 준용)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증권·파생금융거래의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

5. 통계

가. 지급결제시스템별 결제건수

(일평균, 천 건, %)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한은금융망	20.8	22.2	23.3	23.3	0.0
소액결제시스템	27,878	32,614	36,230	39,878	10.1
어음교환시스템	200	175	154	114	-26.2
지로시스템	4,193	4,120	4,104	4,050	-1.3
금융공동망	23,485	28,319	31,971	35,714	11.7
(전자금융공동망)	16,114	19,041	21,333	23,938	12.2
(타행환공동망)	273	254	238	231	-3.1
(CD공동망)	1,226	1,064	967	892	-7.8
(CMS공동망)	3,798	3,913	4,077	4,239	4.0
(지방은행공동망)	0.4	0.3	0.3	0.3	-9.8
(전자상거래공동망)	108	138	121	104	-14.5
(직불카드공동망)	0.1	0.0	0.0	0.0	-69.4
(오픈뱅킹공동망) ¹⁾	1,966	3,908	5,234	6,310	20.6

주: 1) 입·출금 합계 기준

나. 지급결제시스템별 결제금액

(일평균, 십억 원, %)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한은금융망	423,552	488,491	524,331	554,611	5.8
소액결제시스템	80,201	94,338	99,279	100,071	0.8
어음교환시스템	7,254	7,039	7,340	7,232	-1.5
지로시스템	1,042	1,098	1,174	1,237	5.4
금융공동망	71,906	86,201	90,765	91,602	0.9
(전자금융공동망)	65,261	78,757	83,473	84,283	1.0
(타행환공동망)	5,191	5,504	4,885	4,622	-5.4
(CD공동망)	722	655	584	514	-11.9
(CMS공동망)	401	409	439	454	3.4
(지방은행공동망)	5.7	4.8	4.5	4.0	-10.7
(전자상거래공동망)	15	18	17	16	-7.0
(직불카드공동망)	0.0	0.0	0.0	0.0	-70.8
(오픈뱅킹공동망) ¹⁾	310	853	1,364	1,709	25.3

주: 1) 입·출금 합계 기준

다.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규모

(일평균, 건, 십억 원, %)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건수	참가기관 간	19,647	21,027	22,047	21,995	-0.2
	콜자금	387	342	335	400	19.4
	(콜거래시스템)	387	342	334	399	19.4
	(일반자금이체시스템)	0	0	0	0	-17.1
	증권자금	14,828	15,989	16,757	16,426	-2.0
	(DVP시스템)	13,688	14,828	15,616	15,304	-2.0
	(일반자금이체시스템)	1,140	1,161	1,141	1,122	-1.6
	외환자금	549	514	528	615	16.6
	(CLS시스템)	39	39	40	40	0.2
	(일반자금이체시스템)	510	475	488	576	17.9
	고객자금	2,769	2,978	3,205	3,309	3.2
	(수취인지정자금이체시스템)	916	957	994	1,005	1.1
	(일반자금이체시스템)	736	731	734	759	3.4
	(연계결제시스템)	1,117	1,290	1,478	1,545	4.6
	차액자금	239	237	240	238	-0.6
	기타	875	967	983	1,007	2.5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1,159	1,179	1,244	1,294	4.1
	국고금수급 ¹⁾	1,088	1,101	1,156	1,205	4.2
	한국은행대출	23	26	34	34	0.8
국공채거래 ²⁾	47	52	54	55	3.1	
원화자금 합계	20,806	22,206	23,290	23,289	0.0	
외화자금 합계 ³⁾	7.3	7.2	8.2	9.1	10.3	
금액	참가기관 간	405,009	465,366	497,264	533,321	7.3
	콜자금	21,579	20,603	23,058	28,047	21.6
	(콜거래시스템)	21,575	20,596	23,047	28,043	21.7
	(일반자금이체시스템)	3	6	11	4	-65.2
	증권자금	236,056	257,375	269,895	301,201	11.6
	(DVP시스템)	190,348	205,992	222,890	253,265	13.6
	(일반자금이체시스템)	45,708	51,382	47,005	47,936	2.0
	외환자금	14,831	14,464	16,822	19,163	13.9
	(CLS시스템)	3,326	3,131	3,645	3,492	-4.2
	(일반자금이체시스템)	11,505	11,333	13,177	15,671	18.9
	고객자금	63,162	73,602	79,462	79,164	-0.4
	(수취인지정자금이체시스템)	14,894	17,746	21,046	20,372	-3.2
	(일반자금이체시스템)	35,841	40,701	41,505	40,797	-1.7
	(연계결제시스템)	12,427	15,155	16,912	17,995	6.4
	차액자금	22,451	25,889	27,466	26,957	-1.9
	기타	46,930	73,435	80,560	78,790	-2.2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18,543	23,124	27,067	21,290	-21.3
	국고금수급 ¹⁾	7,808	9,493	10,398	9,175	-11.8
	한국은행대출	2,252	3,463	3,812	3,139	-17.6
국공채거래 ²⁾	8,484	10,168	12,857	8,976	-30.2	
원화자금 합계	423,552	488,491	524,331	554,611	5.8	
외화자금 합계(백만 달러) ³⁾	1,002	1,128	1,637	1,210	-26.0	

주: 1)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거래(여유자금 운용 및 회수, 국세수납 등)만 포함
 2) 국채 및 통안증권 발행·상환,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매거래(환매포함)
 3) 예치 및 인출 포함

라. 지급수단별 결제규모

(일평균, 천 건, 십억 원, %)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건수	어음·수표	308	271	235	177	-24.8
	교환제시	200	175	154	114	-26.2
	발행창구제시	100	89	75	57	-23.6
	전자어음	7.0	6.5	6.0	5.9	-2.3
	계좌이체 ¹⁾	27,156	31,967	35,604	39,305	10.4
	지급카드	63,273	66,900	73,453	78,379	6.7
	신용카드	39,211	42,044	46,400	50,097	8.0
	(물품 및 용역 구매)	39,034	41,882	46,240	49,930	8.0
	(현금서비스)	177	162	161	167	4.2
	체크카드	23,187	24,163	26,271	27,648	5.2
	선불카드	734	504	565	358	-36.6
	직불카드	0.1	0.0	0.0	0.0	-69.4
	현금카드 ²⁾	141.8	189.5	216.9	276.7	27.6
	전자화폐	0.5	0.1	0.1	0.1	-26.9
금액	어음·수표	18,240	18,900	16,662	15,555	-6.6
	교환제시	7,254	7,039	7,340	7,232	-1.5
	발행창구제시	8,703	7,975	7,189	6,196	-13.8
	전자어음	2,283	3,886	2,133	2,127	-0.3
	계좌이체 ¹⁾	72,801	87,152	91,787	92,690	1.0
	지급카드	2,669	2,909	3,266	3,460	5.9
	신용카드	2,109	2,312	2,611	2,780	6.5
	(물품 및 용역 구매)	1,960	2,160	2,453	2,621	6.9
	(현금서비스)	149	152	158	159	0.3
	체크카드	540	581	637	666	4.5
	선불카드	17.0	12.6	14.5	9.7	-33.3
	직불카드	0.0	0.0	0.0	0.0	-70.8
	현금카드 ²⁾	2.3	2.8	3.3	4.5	37.6
	전자화폐	0.0	0.0	0.0	0.0	-34.3

주: 1) 한은금융망 계좌이체 제외

2) 직불형카드의 일종으로 2012년 11월부터 서비스 개시

마. 주요 전자금융 이용현황

(일평균, 천 명, 천 건, 천 매, 십억 원, %)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인터넷 뱅킹 ¹⁾	등록고객수 ²⁾³⁾	174,392	190,859	207,036	224,011	8.2	
	(개 인)	163,576	178,942	194,256	210,463	8.3	
	(법 인)	10,816	11,917	12,780	13,548	6.0	
	이용건수	14,680	17,321	19,712	22,652	14.9	
	이용금액	58,997	70,554	76,339	82,006	7.4	
모바일 뱅킹	등록고객수 ²⁾³⁾	135,080	153,369	169,219	186,524	10.2	
	이용건수	11,684	14,363	16,841	19,848	17.9	
	이용금액	9,415	12,858	14,176	15,204	7.3	
전자 화폐	발급매수 ³⁾	16,122	16,251	16,263	15,468	-4.9	
	이용금액	0.0	0.0	0.0	0.0	0.0	
전자 어음	발행 규모	건수	5.8	5.4	5.2	5.0	-3.6
		금액	3,591	5,754	4,147	3,672	-11.5
	할인 규모	건수	1.0	0.8	0.8	0.7	-9.3
		금액	49.0	46.0	48.4	46.0	-5.0

주: 1) 모바일뱅킹을 포함

2) 19개 국내은행(3개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및 우정사업본부(우체국예금) 고객 기준(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 합산)

3) 기말 기준

바. 간편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일평균, 천 건, 십억 원, %)

		2020	2021 ²⁾	2022 ²⁾	2023	증감률
간편지급 ¹⁾	이용건수	14,539	19,812	24,125	27,351	13.4
	전자금융업자	7,475	11,237	13,614	15,170	11.4
	(신용카드 ³⁾)	3,789	5,626	6,724	7,346	9.2
	(선 불)	3,250	4,964	6,129	6,942	13.3
	(계 좌)	435	648	761	883	16.0
	휴대폰제조사	4,476	5,542	7,173	8,598	19.9
	금융기관	2,588	3,032	3,339	3,584	7.3
	이용금액	449	607	761	875	15.0
	전자금융업자	205.2	301.4	379.9	427.7	12.6
	(신용카드 ³⁾)	135.3	194.0	238.5	261.2	9.6
	(선 불)	56.8	88.5	118.6	140.1	18.2
	(계 좌)	13.1	18.9	22.9	26.4	15.2
	휴대폰제조사	107.0	137.6	185.3	223.8	20.8
	금융기관	136.9	167.6	196.2	223.9	14.1
간편송금	이용건수	3,258	4,333	5,196	6,358	22.4
	전자금융업자	3,062	3,998	4,811	5,912	22.9
	금융기관	196.3	335.0	385.6	446.6	15.8
	이용금액	357	505	626	777	24.1
	전자금융업자	329.3	472.3	610.9	766.1	25.4
	금융기관	27.3	32.2	15.0	10.7	-28.7

주: 1) 간편지급 이용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관 및 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편제를 시작한 2016년 이후 시계열을 모두 소급해 개편)

2) 자료제출기관의 수정·보고사항을 반영해 일부 자료 수정

3) 체크카드 포함

6. 용어 해설

용어	해설
간편지급 easy payment service	지급카드 등의 중요 정보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미리 등록해두고 거래 시 간편인증수단(예: 비밀번호,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을 이용해 재화·서비스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간편송금 easy transfer service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선불금 계정에 미리 충전한 자금을 거래 시 간편인증수단(예: 비밀번호,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을 이용해 수취인의 전화번호(메시지 발송) 및 선불금 계정으로 송금하는 서비스
감시 oversight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기능
거래정보저장소 trade repository	금융거래 정보를 집중해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시장인프라(FMI)
거액결제시스템 large-value payment system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결제시스템
결제리스크 settlement risk	자금 또는 증권 결제시스템에서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리스크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 신용·유동성·운영·법률 리스크 등을 포함
결제완결성 settlement finality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급, 청산, 결제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상황에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규칙,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금융시장인프라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금융시장에서 지급, 청산, 결제, 정보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프라를 통칭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 중앙예탁기관, 중앙거래당사자, 증권결제시스템, 거래정보저장소 등을 포괄
담보 collateral	담보 제공자가 담보권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 또는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
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네트워크의 각 노드가 분산 및 동조화(distributed and synchronised)되어 있는 원장을 검증하고 변화를 기록할 수 있는 제반 기술 및 절차
소액결제시스템 retail payment system	수표, 계좌이체, 지급카드, 지로 등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
순이체한도 net debit cap	차액결제거래 시 신용·유동성 리스크 규모를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참가기관이 정한 미결제 순이체액(타 은행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 - 타 은행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의 한도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특정자산(통화, 상품 등) 내지 자산의 집합 등을 담보로 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암호자산
시스템 리스크 systemic risk	금융시장인프라(FMI)에서 특정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으로 확산되어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제리스크
신속자금이체 fast payment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 개인·기업 등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동시에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체되고, 연중 24시간 이용가능한 지급결제서비스
신용리스크 credit risk	금융시장인프라(FMI) 참가기관이 파산 등으로 결제시점에 지급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리스크
실시간총액결제 real-time gross settlement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시키지 않고 지급지시 건별로 그 지급지시 총액을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방식
암호자산 crypto-asset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에 의해 발행되어 대금결제 또는 투자대상 등으로 쓰이는 자산

용 어	해 설
업무지속성 business continuity	업무가 중단되지 않은 상태 또는 시스템의 한 개 이상의 요소가 실패하거나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외부사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합의된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조직적, 기술적 및 인적 수단
오픈뱅킹 open banking	핀테크 기업 등이 고객의 명시적 동의하에 표준방식(API)을 통해 은행의 고객 정보에 접근해 지급서비스 및 금융정보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외환동시결제 payment versus payment	외환결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거래에 따른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동시에 주고 받는 결제방식
운영리스크 operational risk	정보시스템 또는 내부 처리절차의 결함, 운영인력의 실수 또는 관리 실패, 외부 사건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인프라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축소, 질적 저하 또는 장애가 발생할 리스크
유동성리스크 liquidity risk	금융시장인프라(FMI) 참가기관의 건전성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예정된 시간에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대체자금도 조달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리스크
유틸리티토큰 utility token	분산원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해당 토큰의 발행자에 의해서만 수용되는 암호자산
이연차액결제 deferred net settlement	일정기간 중 이루어진 자금이체에 대해 참가기관 간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 처리한 후 사후에 결제하는 방식
일관처리 straight through processing	지급결제 프로세스 전 과정을 표준화된 메시지에 의한 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
자금결제시스템 funds transfer system	참가자 간 자금의 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하며 지급수단, 참가기관, 운영기관, 업무처리 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등으로 구성
중앙거래당사자 central counterparty	증권거래 계약의 매도자에 대해 매수자 역할을,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자간 차감에 의한 청산업무를 수행하여 결제 유동성을 절약하는 한편, 결제이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가자의 리스크 관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금융시장인프라(FMI)
중앙예탁기관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증권 예탁, 계좌대체, 예탁증권에 대한 권리행사 관리 등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금융시장인프라(FMI)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디지털화폐)
증권결제시스템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장부상의 계좌대체(book-entry) 방식으로 증권의 이전을 통해 증권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증권대금동시결제 delivery versus payment	중앙예탁기관의 증권결제시스템을 대금결제은행의 자금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증권거래 시 증권과 자금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
토큰 증권 security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주식, 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등에 대한 투자계약 등 비정형적인 증권을 포함하여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
참가기관 participants	금융시장인프라(FMI)가 제공하는 자금 및 기타 금융거래의 청산, 결제 및 정보저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FMI와 약정을 체결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default	해당 시스템의 규정 및 계약 등에 따라 자금 또는 증권의 이체를 완료하는 데 실패한 사건
청산 clearing	결제를 위해 송부된 어음, 수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할 차액을 산출하는 과정. 거래 이후 지급수단의 수령, 조회, 통지 및 차액계산(netting)이나 결제 전의 포지션 산출과정 모두가 청산에 해당
최종 결제 final settlement	채권-채무관계 종결을 위해 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의 소유권을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으로 이전하는 행위 또는 그 상태
예금 토큰 tokenized deposit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예금을 디지털화한 것

부문별 집필자

부문	집필자
보고서 작성 총괄	금융결제국 이동규·조성민·이한별·이하림(결제안정팀)
개요	조성민·이한별(결제안정팀)
I.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1. 거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국 이한별·이하림·오건우(결제안정팀) 금융업무실 현소연·김홍준(결제운영팀) 강태현·정준영(결제업무팀) 우승준·조영화·허진우(증권팀) 권상준(국고팀)
2.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국 이한별·이하림·오건우(결제안정팀) 금융업무실 김미주·김다인(결제운영팀)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김미주·김다인(결제운영팀)
4. 증권결제시스템	금융결제국 이한별·이하림·오건우(결제안정팀)
II.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	
1. 거액·소액결제시스템 리스크관리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금융결제국 김용구·권기백(결제정책팀) 최지아(결제리스크팀), 조성민(결제안정팀)
2. 지급수단 편의성 제고	김광룡·문정호(전자금융팀) 민효식·이하림(결제안정팀)
	발권국 이병록(발권정책팀)
III.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국내외 협력 강화	
1. 국내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전성 및 복원력 제고	금융결제국 조성민·추승우·이한별·민효식(결제안정팀) 박기정(결제정책팀), 최윤석(결제리스크팀)
2. 국내외 지급결제 관련 논의 동향	김민영(국제결제협력반), 추승우(결제안정팀) 박근형·문정호·이재현·이정인·김재환(전자금융팀)
IV.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1. CBDC 사업 추진 강화	금융결제국 박종세·이형구(디지털화폐기획팀) 김덕형·장하주(디지털화폐분석팀) 박준영(디지털화폐기술팀) 정문기(결제리스크팀)
	금융안정국 나현주(금융안정연구팀)
2.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추진	금융결제국 이현우·박성우(지급결제개선반)
3.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추진	방수연·강규희(ISO 20022 도입반)
보충 설명	김원익·신누리(결제정책팀) 김광룡·문정호(전자금융팀) 장현규(결제안정팀)
부록	민효식·이하림·왕재곤·장현규(결제안정팀) 김민재(결제정책팀)
	금융업무실 김휘인(결제운영팀)